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555호, 2026.4.21. 공포, 2026. 10.22. 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도입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의 기한, 지급보증서 발급 기관, 보증료 또는 공제료 산정 기준 및 이행촉구 통지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및 관련 서식 신설)
-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액 산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절차 규정(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보증료 또는 공제료 산정 및 이행촉구 통지 방법 규정(안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3, 제2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육기관 지정서 및 수료증)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금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증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법인을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종류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교육기관 지정서 및 수료증)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신 설>	제7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의안 소관 부서명 〉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202-6425